

서울특별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동의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 제174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라.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가. 서울시정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게 명예시민증을 수여하여 격려하고 국제교류협력 및 우호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조례(제4조)에 의거 명예시민 수여 대상자에 대해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추진경과
 - 2020. 6. 8 ~ 7. 17 명예시민 추천공고 및 접수(총29개국 37명)
 - 2020. 7. 29. 2020 명예시민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
(추천자 37명 중 19명 선정)
- 나. 선정결과 : 총 19명(남 14명, 여 5명) ※ 세부명단 동의안 참조

다. 향후일정(안)

- 2020.11.5. 「2020 명예시민의 날」 기념식 개최 및 수여

라. 관련근거

1) 수여대상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2조

-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음

2) 수여대상자 결정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1항

-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로 추천된 자 중에서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

3) 서울시의회 동의 :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 제2항

- 시장은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
- ※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 발생 시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음

4. 검토의견(수석전문위원 강상원)

가. 동의안의 개요

- 동의안은 서울시정에 대한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시민에게 귀감이 되어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이하 “명예시민조례”)에 따라 명예시민 수여대상자로 선정된 외국인 19명에 대해 서울시의회(이하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

나. 서울시 명예시민 현황

- 서울시는 1958년부터 사회봉사, 재능기부, 연구활동 및 국가간 친선 교류를 통해 사회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한 체류 외국인과 방문 외빈에게 ‘명예시민’ 으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 대상자의 선정은 후보자 추천공고와 추천, ‘명예시민증 수여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의 심사, 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진행되며, 이 과정을 통해 부적절한 대상자 선정을 막고 명예시민증의 권위를 유지하고 있음.
 - 명예시민증 수여방식은 추천공고를 통한 ‘일반수여’ 와 외교 사절·귀빈에게 수여하는 ‘특별수여’ 가 있으며, 특별수여의 경우 사전예측이 어려워 ‘명예시민조례’ 제4조제2항¹⁾의 단서규정에

1)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근거해 시의회 동의 없이 수여하고 있음.

- 최근에는 2017년 21명, 2018년 32명, 2019년 34명이 명예시민이 되었으며, 제도가 최초로 도입²⁾된 이후 현재까지 모두 99개국 858명의 외국인이 명예시민증을 받았음[참고자료].

다. 명예시민 선정의 적정성

- ‘심사위원회’는 공공단체, 사회대표, 시민으로부터 추천받은 후보 37명을 대상으로 시정공로와 공적사항, 범범사항, 거주요건 등을 종합 심사하여 공적내용과 서울시정 연관성이 인정된 명예시민 후보자 19명을 최종 선정하였음(7월 29일).
- 대상자들은 ‘명예시민조례’에서 정한 자격요건³⁾을 모두 갖추었으며, ‘심사위원회’의 심사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으므로 명예시민으로서의 적합성이 인정됨.
- 다만, 2020년 2/4분기 현재 서울시에 등록된 외국인수는 26만 4,806명⁴⁾으로, 선정조건을 감안하더라도 명예시민 신청자가 37명에 그친 것은 현저히 낮은 실적으로 볼 수 있음.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 2) 1958년 공로시민증 제도로 시행되었으며, 1972년 명예시민증 조례가 제정됨.
- 3) 제2조(수여대상) 제1항 제1호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 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정"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 4) 출처: 서울시 「주민등록인구통계」

- 이는 후보자 추천이 주로 주한대사관, 국제기구, 글로벌센터, 자치구 등 관계기관 협조요청에 의존하고 있어 신분이 확실하고 대외적으로 영향력 있는 대사관 직원, 전문직 종사자, 대기업 소속 임직원 등에 제한적으로 추천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의 국제교류 증진과 글로벌 위상 강화를 위해서는 ‘친서울’ 인사의 네트워크 구축이 필수적이므로, 명예시민 후보자 발굴을 위한 홍보 확대 등 서울시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됨.

라. 사후관리의 필요성

- 명예시민에게는 시정관련 각종 위원회 위촉이나 행사초청 등으로 시정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서울시립미술관, 서울시립박물관, 도시공원의 입장료 면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 서울시 행정위원회에 위촉되어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인 명예시민은 3명에 그치고 있음.
- 따라서 외국도시와의 협력적 네트워크 유지와 꾸준한 교류활동을 위해서는 관심 시정분야에 대한 위원 위촉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임.

5)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정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정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각종 위원회 활동중인 명예시민 현황>

구분	명예시민 이름	현 직	소속 위원회	선정연도
1	장-루이 쇼사드	수에즈 이사회 의장 Chairman of the Board of Directors of SUEZ	SIBAC 위원 (서울경제자문단)	2019년
2	제프리 존스	미래의 동반자 재단 이사장	SIBAC 자문 (서울경제자문단)	2014년
3	에릭 호프만	Asia Risk & Insurance Advisors Korea(ARIA) 대표	FIAC 위원 (외국인투자자문회의)	2015년

○ 한편, 명예시민증 취소에 대한 조례상 근거⁶⁾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수여를 취소한 사례가 전혀 없음.

- 2020년 5월, 환경부로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불법조작에 연루되어 도피성 퇴임한 외국계 자동차기업 ‘M사’ 대표가 2018년도에 서울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것으로 밝혀져 명예시민의 권위를 실추시켰다는 비판이 제기됨.

○ 따라서 명예시민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수여취지에 위반되었을 경우 수여취소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명예시민의 권위와 위상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있음.

담당조사관	연 락 처
박 은 샘	2180-8064

6)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 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참고자료 1]

명예시민증 수여현황

□ 연도별

2020. 8. 21 기준

구 분	총 계	외국거민	시정(국가) 유공	국제대회 참석 등
총 계	858	172	516	170
공로시민증(소계) (1958~1969)	136	28	69	39
명예시민증(소계) (1972~)	722	144	447	131
1973 ~ 1980	155	6	19	130
1981 ~ 1990	13	5	7	1
1991~2000	135	7	128	-
2001	14	3	11	-
2002	11	4	7	-
2003	9	2	7	-
2004	23	11	12	-
2005	38	27	11	-
2006	27	10	17	-
2007	13	2	11	-
2008	16	1	15	-
2009	17	1	16	-
2010	42	2	40	-
2011	17	3	14	-
2012	12	1	11	-
2013	16	0	16	-
2014	21	9	12	-
2015	25	9	16	-
2016	30	9	21	-
2017	21	6	15	-
2018	32	10	22	-
2019	34	15	19	-
2020	1	1	-	-

※ 국제회의 참석 등 : 아세아 및 서태평양지구 건설업자대회(1964년), 제14차PATA총회(1965년), 국제군진의약협회(1977년), 미스유니버스 참가(1980년) 등

□ 국적별 : 99개국 858명

(단위:명)

대륙	국적		계	성별		대륙	국적		계	성별	
				남	여					남	여
아프리카 (41)	1	가나	2	2	0	유럽 (260)	10	벨기에	13	7	6
	2	나이지리아	6	6	0		11	벨라루스	1	1	0
	3	남아프리카공화국	5	5	0		12	불가리아	1	1	0
	4	레소토	1	1	0		13	스웨덴	7	6	1
	5	세네갈	2	2	0		14	스위스	4	3	1
	6	수단	11	11	0		15	스코틀랜드	1	0	1
	7	앙골라	3	2	1		16	스페인	10	6	4
	8	에티오피아	4	4	0		17	슬로바키아	1	1	0
	9	차드	1	1	0		18	아제르바이잔	1	1	0
	10	코트디부아르	2	2	0		19	아이슬란드	1	0	1
	11	콩고	3	3	0		20	아일랜드	5	4	1
	12	탄자니아	1	1	0		21	에스토니아	2	1	1
아시아 (211)	1	네팔	9	8	1	22	영국	31	21	10	
	2	대만	11	11	0	23	오스트리아	6	5	1	
	3	말레이시아	4	3	1	24	우크라이나	2	2	0	
	4	몽골	8	6	2	25	이탈리아	15	11	4	
	5	방글라데시	1	1	0	26	조지아	2	2	0	
	6	베트남	8	7	1	27	체코	4	3	1	
	7	스리랑카	3	1	2	28	터키	14	13	1	
	8	싱가포르	8	7	1	29	폴란드	6	5	1	
	9	우즈베키스탄	7	4	3	30	프랑스	25	18	7	
	10	인도	4	3	1	31	핀란드	4	3	1	
	11	인도네시아	7	5	2	32	헝가리	5	5	0	
	12	일본	45	36	9	1	과테말라	2	1	1	
	13	중국	44	39	5	2	도미니카	2	1	1	
	14	카자흐스탄	10	9	1	3	멕시코	14	11	3	
	15	캄보디아	1	1	0	4	바하마	1	0	1	
	16	키르기스스탄	3	2	1	5	베네수엘라	2	0	2	
	17	타이티	1	0	1	6	벨리즈	1	0	1	
	18	태국	17	14	3	7	볼리비아	2	0	2	
	19	파키스탄	5	4	1	8	브라질	7	5	2	
	20	필리핀	15	12	3	9	아르헨티나	4	2	2	
중동 (23)	1	사우디아라비아	6	6	0	10	에콰도르	1	0	1	
	2	아랍에미리트	2	2	0	11	엘살바도르	1	1	0	
	3	알제리	2	1	1	12	온두라스	2	1	1	
	4	오만	1	1	0	13	우루과이	1	0	1	
	5	요르단	2	2	0	14	칠레	6	5	1	
	6	이라크	3	3	0	15	코스타리카	5	3	2	
	7	이란	2	2	0	16	콜롬비아	8	6	2	
	8	이스라엘	3	2	1	17	트리니다드토비고	1	0	1	
	9	이집트	2	1	1	18	파나마	1	0	1	
유럽 (225)	1	그리스	9	7	2	19	파라과이	1	0	1	
	2	네덜란드	11	7	4	20	페루	11	9	2	
	3	노르웨이	5	3	2	21	푸에르토리코	1	0	1	
	4	덴마크	9	7	2	1	미국	204	164	40	
	5	독일	47	42	5	2	캐나다	21	15	6	
	6	러시아	13	12	1	1	뉴질랜드	10	9	1	
	7	루마니아	3	2	1	2	파푸아뉴기니	1	0	1	
	8	몰도바	1	0	1	3	호주	13	8	5	
	9	몰타	1	0	1	-	-	-	-	-	
					북미 (225)						
					오세 아니아 (24)						

[참고자료 2]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 수여 조례」 주요내용

제2조(수여대상) ① 서울특별시 명예시민증(이하 "명예시민증"이라 한다) 수여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1. 서울특별시에 계속하여 3년 이상 거주하고 있거나 총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외국인 중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장"이라 한다)에 공로가 현저하고 서울특별시민과 거주 외국인에게 귀감이 되는 자
2. 서울특별시를 방문하는 외빈 또는 현지외국인

② 서울특별시정(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거주요건 등을 완화하여 명예시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후보자 추천) 공공단체의 장, 사회단체의 장 또는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은 시민은 명예시민증 수여 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다.

제4조(수여대상자 결정) ①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은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추천된 자 중에서 시장이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2조제2항의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서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해서 명예시민증을 수여하려는 때에는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의회가 폐회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시의회의장과 협의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수여방법 및 부상) ① 제4조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증과 명예시민증명서를 수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명예시민메달 또는 기념품을 수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 명예시민수여증명서, 명예시민메달의 제작에 관한 사항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사후관리) ①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민에 준하여 행정상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②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시장관련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거나 시 주관 행사에 참여하게 하는 등 시장 참여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③ 명예시민증을 수여받은 자에 대하여는 서울시립미술관과 서울역사박물관, 서울특별시 도시공원의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④ 시장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수여기록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7조(수여취소) ① 시장은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가 수여취지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예시민증수여를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서 명예시민증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때부터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행정상 혜택 및 시정참여의 기회부여도 취소된다.

제8조(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사 또는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에 명예시민증수여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자로 추천된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적격성 등 심사

2. 명예시민증을 수여 받은 자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심의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행정1부시장으로 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서울특별시 국장급 이상의 공무원

2. 그 밖에 서울시정과 국제교류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⑤ 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와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